#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한지아·김예지·김 건

김기현 • 이상휘 • 임이자

박성민 · 김종양 · 서일준

백종헌 • 박수민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독 문제는 증가하고 있으며, 주류, 마약, 도박 등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.

이로 인해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독 관련 업무가 정부 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중독 예방과 관리에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,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 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주류, 마약,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,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, 치료 및 회복 지원에 관하여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,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·위탁하여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주류, 마약류 및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·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조).
- 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, 중독자 치료·회복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다.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 국가중독관리위원 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여러 부처별 업무를 심의하도록 함 (안 제7조)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 10조).
- 마. 각급 학교의 장이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보 건복지부장관은 중독 예방과 폐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 하도록 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- 바. 중독 예방, 중독자의 발견, 중독자의 치료·재활, 중독자의 사회복 귀까지 이르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독전문치료기 관,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

치하도록 함(안 제14조, 제15조 및 제16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6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밥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주류, 마약류 및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·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중독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·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·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.
    - 가. 「주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
    - 나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
    - 다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
  - 2. "중독자"란 중독이 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주류, 마약류 및 도박 등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고, 중독자에게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독 예방, 중독자의 치료·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중독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·회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, 중독자 치료·회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중독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· 회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야 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"이라 한다)과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·회복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
  - 2.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·회복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  - 3.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・회복 지원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관

한 사항

- 4.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5.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·회복 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- 7.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 · 회복 지원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
- 8.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·회복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 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
- 9. 그 밖에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·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행산업통합감

독위원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 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국가중독관리위원회) ① 중독의 예방, 중독자의 치료·회복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중독의 예방, 중독자의 치료·회복 지원 관련 기관 간 업무조정 에 관한 사항
  - 3.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중독의 예방, 중독자의 치료·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중 요한 사항
- 제8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위촉위원 중 1인으로 하되, 위촉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선정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방부 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으로 한다.
- ④ 위촉위원은 중독 예방, 중독자 치료·회복 지원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의료인이나 중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 의로 본다.
- ①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위원회의 사무기구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등 중독 관련 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,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·단체에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,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중독예방교육의 실시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은 소속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2조(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·송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 및 중독의 폐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3조(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을 위한 상담·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 또는 중독자 가족이 참여하는 자조(自助)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, 제2항

- 에 따른 인력과 비용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중독전문치료기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판별과 치료· 재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 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중독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중독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중독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전문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에 관한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중독의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・회복 지원에 관한 조사・연구
  - 2. 제16조에 따른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 원
  - 3. 중독의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·회복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

- 4. 제13조에 따른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을 위한 상담·교육 프로그램의 개발
- 5.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
- 6. 제18조에 따른 중독 관련 연구 및 개발
- 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"지역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
  - 2. 중독자 대상 사회복귀 지원사업
  - 3. 중독자와 제14조에 따른 중독전문치료기관과의 연계
  - 4. 중독자 및 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·교육의 실시
  - 5.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이 참여하는 자조모임 운영 지원

- 6. 중독자의 사례관리
- 7. 그 밖에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· 회복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(이하 "전문인력"이라 한다)을 양 성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병원·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중독관련 연구·개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인 중독의 예방 및 치료·회복 지원방법에 관한 연구·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야 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·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

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- 제19조(비밀엄수의 의무) 이 법에 따라 중독의 예방과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중독의 예방,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1조(벌칙) 제19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법 제16조 에 따라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것으 로 본다.